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:김숙진, 제출일시:2025.09.01 12:12, 출력자:김숙진, 다운로드일시:2025.09.01 12:14

이행명령 신청서

사 건 번 호	2024르25114　이혼 등
신　청　인	김숙진(810617-*******)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6길 6 (통인동) 301호 (휴대전화: 010-6334-****　이메일: agoua@naver.com) 등록기준지: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80번지
피 신 청 인	전인철(840714-*******) 공주시 우성면 상도길 29 (우성면) (휴대전화: 010-4542-****) 등록기준지: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306번지

신청취지

1. 피신청인은 귀 원 2025.6.12 선고된 서울고등법원〔사건번호 : 2024르25114호〕 사건의　확정판결(심판, 조정조서)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신청인에게 사건 본인들의 양육비로,

가. 이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밀린 양육비 금 8,200,000원을 지급하고,
나. 이 명령이 고지된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0,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

2. 심판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

신청이유

1. 신청인은 2024. 10. 22. 선고된 서울가정법원(사건번호:23드합36001) 판결에 따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, 피신청인은 사건본인 1인당 매월 700,000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.

또한 2025. 6. 12. 선고된 서울고등법원〔사건번호: 2024르25114호〕 판결에서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의 **과거 양육비로 5,700,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.**

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:김숙진, 제출일시:2025.09.01 12:12, 출력자:김숙진, 다운로드일시:2025.09.01 12:14

2. 그러나 피신청인은 2024.10.31부터 2025.8.31까지 지급하여야 할 과거 양육비 총 14,000,000원 중 11,500,000원만 지급하였을 뿐, 나머지 **8,200,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**

3. 더구나 피신청인은 2023. 11. 22 자로 사건본인 1인당 월 800,000원씩 지급하도록 명한 사전처분 결정에서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.

4. 피신청인은 확정 판결 직후 직장을 퇴직하고 현재 일용직으로 근로하면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며, **2021년 1월 기준에서도 과거부터 오랫동안 양육비 지급에 있어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. 따라서 향후에도 양육비 지급 불이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**(피신청인 입금 내역 참조)

5. 어린 자녀 2명을 키우는 신청인의 처지로 아이를 키우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는 너무도 중요하기에, 더 이상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바,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무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첨부서류

1. 피신청인 입금 내역
2. 2024르25114__송달및확정증명서
3. 2024르25114_판결정본
4. 23드합36001_(23.11.22)사전처분(직권)

2025. 9. 1.

신청인 김숙진